

##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8 박수호 의원외 3인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8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6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정하였으나 타 시군과의 임야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중 경사도가 너무 낮아서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타 시군과의 임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중 경사도 20% 미만을 20. (36%)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구역안에서 일반적인 개발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이나, 일반적인 개발허가의 기준중 경사도가 너무 낮아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인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20%미만을 20도(약 36%)미만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, 우리시의 특성과 개발,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